

CCTV 설치운영규정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화재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따른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본 학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본 학교 홈페이지 서비스 및 소관부서의 업무 수행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,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 단,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.

- ① 이 규정은 본 학교에 적용한다.
- ② CCTV로 수집 ·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 (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"CCTV"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 · 무선 전송 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 (Closed Circuit Television)을 말한다.
- ② "화상정보"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- ③ "정보주체"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,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- ④ "처리"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· 저장 · 편집 · 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.

제4조 (책임관의 지정)

- ① 본교 CCTV시설 담당부서는 총무과로 하며, 책임관은 총무과장이 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본교의 CCTV 설치/운영,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, 화상정보의 수집 ·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
제5조 (CCTV 설치/운영)

- ① 본교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카메라 대수/위치/성능 및 촬영범위는 별표 1과 같다.
단, 자체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,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- ② 본교 CCTV 촬영시간은 DVR의 성능을 고려하여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.
- ③ DVR은 관리책임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작동키를 관리한다.
- ④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소 30일간 보관한다.

연번	위치	대수	성능	촬영범위	촬영시간	보관기간	비고
1	학교앞 정문	1	ADT-820SDI HD200만화소	교사동 출입 및 진입로	24시간	30일	
2	학교 뒤편 주차장	2	ADT-820SDI HD200만화소	교사동 출입 및 진입로	24시간	30일	
3	학교 중앙현관 앞	2	ADT-820SDI HD200만화소	교사동 출입로 및 운동장 진입로	24시간	30일	

연번	위치	대수	성능	촬영범위	촬영시간	보관기간	비고
4	건물 동편	1	ADT-820SDI HD200만화소	교사동 출입 및 진입로(동편)	24시간	30일	
5	건물 서편 뒤	1	ADT-820SDI HD200만화소	우유창고	24시간	30일	
6	급식소	2	ADT-820SDI HD200만화소	급식소 주변	24시간	30일	
7	구령대 앞	1	ADT-820SDI HD200만화소	운동장 놀이시설	24시간	30일	

제6조 (CCTV의 관리)

① CCTV의 주장치는 비상계획담당관실에 설치하고,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·재생할 수 없으며, 열람/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별표 2의 입출력자료관리대장에 의해 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/재생할 수 있다.

- 책임관
- 관리책임자
- 보안 및 방화관리담당자
- 청사관리담당자
- 책임관의 허락을 받은 자

- ② CCTV에 의하여 수집·처리되는 화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제1항의 각호에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.
- ③ 책임관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·누출·훼손 등에 대비 하여 기술적·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.
- ⑤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.

제7조 (안내판 부착)

본교 출입자에게 CCTV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안내판을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.

CCTV 설치 안내	
목 적	시설관리, 범죄 및 화재예방
촬영시간	24시간 촬영/녹화
촬영범위	-
책 임 관	서성일

(가로 : 40cm, 세로 : 30cm)

제8조 (화상정보의 보호원칙)

- ①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,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제9조 (화상정보의 제한)

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/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

- 1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- 2. 정보주체에게 열람 · 제공되는 경우
- 3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4. 신문 ·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- 5.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- 6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- 7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10조 (열람 등의 요청)

- ① 정보주체는 책임관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/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자 입회 하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 포함)하여야 한다.

- 범죄수사 · 공소유지 ·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-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-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 하는 경우

제11조 (화상정보의 제공)

- ① 화상정보의 열람과 재생요청은 요청자의 소속, 인적사항,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한다.
- ② 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· 제공한 경우에는 입출력자료관리대장(별표 2)에 기록 관리한다.

제12조 (보유 및 삭제)

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보유기간 만료즉시 삭제하도록 한다.

제13조 (비밀유지의무)

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4조 (준용규정)

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,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